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99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2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2. 2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3. 4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운동을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16명을 증원함(안 제2조)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정원의 총수	635명	651명	1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621명	637명	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14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1」에 규정함.(안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603호)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53호) 개정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 도입과 공무원 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력보강,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보강 및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21명”을 “637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입법에 고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505명”에서 “524명”으로 19명 증원되었으나 별정직은 14명, 지도직은 25명으로 각각 변동없고 기능직은 “90명”에서 “87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으며, 특히 일반직 6급 정원의 경우 2004. 9. 2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으로 “130명”에서 “137명”으로 정원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정원책정은 없는지와 향후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책정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부터 내년 까지 2단계로 나눠 시범실시 하되 올해는 1단계로 창원시를 비롯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오는 2007년부터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고성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지난 2004. 4. 29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당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시 보정정원 반영으로 30명을 증원한데 이어 금번 개정 조례안에도 집행기관의 정원 “621명”을 “637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등 우리군에서는 정원관리를 최대한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정원을 감축해야 하지 않는지?
- 답 : 2006년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이후에는 조직 진단을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정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현재보다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문 : 교육지원담당 등 신설담당이 7개인데 6급팀장 보직은 문제가 없는가?
- 답 :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보면 6급정원이 “130명”에서 “137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 : 고성군 행정기구·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에 정원 2명 증원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반영되지 않는 사유는?
- 답 : 도내 시·군 의회사무과 정원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번에는 2명 증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3.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